제 3 회 정기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1974. 7. 3 (수) 오전 8시
2. 장　　소 : YMCA 1층 식당
3. 제 2 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낭독 통과
4. 각부보고
   (가) 재무위
   6월중 회계보고 본회, 회관관리
   (나) 치무위
   ㄱ. 6월 6일 소위원회에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ㄴ. 6월 7일 최종적으로 한국방송공사에 시나리오 수정요청
   ㄷ. 6월 8일 제29회 구강보건상 시상식 개최
   ㄹ. 6월 14일 소위원회 잔무처리(팜프렛을 인쇄하여 발송중에 있으며 동 행사에 대한 소요경비 결산을 보고함)
   ㅁ. 김인철부회장 동 시상식 준비위원장으로서 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시상식을 마치게된데 감사 드립니다.
   (다) 국제위
   ㄱ. 6월 18일 개최한 이대회의 총회에는 아래와같이 본 협회대표를 선정 참석하도록 하여 15일 출발 하였음.
   대표 김창현, 교치대표 김영선, 장지상
   그리고 주최국대표와 애래총무에게 선물을 보냈음.
   ㄴ. 6. 28일 세계치과연맹 참석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석 희망자 13명중 5명이 참석하여 여권수속은 개인별로하는것이 좋다는 중론 이여서 개인별로 위임하고 협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문제만 도와주기로 하였음.
   (라) 심사위
   6월 27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과기공소 문제를 논의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우선 지시감독에 대한 법적질의를 보사부에 요청하고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검토 시정건의를 하기도 하였음.
   (마) 공보위
   지난 6월 1일자로 84호 치과월보를 발간하였음.
   (바) 군무위
   부산에서 질의한 예비역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병역법에 만 40세로 된데 대한 법적해석을 요구하였기에 병무청 기타 관계에 문의 회신키로 하였음.
   (사) 학술위
   6월 4일 학술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종합학술대회는 10월 27일(일) 개최키로 결정
   연제는 특강 싼드라초청(세계보건기구 고문)
   엑스레이에 관하여, 구강외과에 관하여
   심포지움 안티바이오틱에 관하여
   테블크리닉 각자 희망회원에 의하여
   장소는 서울치대 예정
   보수 교육 문제
   종합학술대회 청강자는 6시간을 인정하고 각지부 및 학회 참석을 4시간으로 인정 종합 10시간을 교육 받도록 하였음.
   (아) 의료보험위
   6월 25일 제 1 회 의료보험 연구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음.
   ㄱ. 지난 집행부 및 전 의료보험 연구위원이 많은 업적을 발표하였고 보건사회부의 의료보험 및 동 시행령 개정등을 건의하여 금번 위원회는 실질적인 추진사업을 전개 하기로 하였음.
   ㄴ.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국민 학교아동의료보험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각 위원은 동 제도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다음 위원회에 제시키로 하였음.
   (자) 지난 6월 17일 제 1 회 의료심의위원회를 보사부에서 개최하여 본인이 동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받았고 5개분과위원회로 분류 의사위원회에는 각 협회 대표가 선임 되었음.
   의료수가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미결 상태로 끝났음.
   치과 인상제 용량문제(실양 350그람 표시 500그람)가 현제 시중에서 매매되는 "랭"이라는 인상제가 용량부족으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어 조사중에 있으며 수입상을 조사 손해배상을 요구할계획으로 서울치과의사회에서 추진중에 있음.
   7월 2일 춘천치과의사회에 출장하여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원 친목 및 회무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의　　안

(1) 새마을 사업 추진
보건사회부에서 시달된 새마을사업으로서 본 협회에서 실시한 자매결연 부락선정 및 월 1회 무료진료는 회장단이 결정토록 위임.

(2) 구강보건유공자 표창
ㄱ. 심사위원회에서 결격사유를 검토 지부장이 감사패를 수여토록위임키로 하였음.
ㄴ. 구강보건유공자 심사기준을 심사위원회에서 제정 이사회에 상정키로 가결

(3) 국가시험문제
기초과목과 임상실기를 시험과목에 신설할것을 국립보건연구원에 건의키로함.

(4) 세계치과연맹 대표자 선정
대표 지헌택, 교체대표 김용관, 옵서버 오응서, 김창현, 장영규

(5) 종합학술대회 개최
일　　시 : 10월 27일 (일)
연　　제 : 특강 싼드라 (세계보건기구고문)
엑스레이(안형규씨에게 위임)
구강외과(김용관 부회장 위임)
강　　사 초빙등 재정적인 문제는 동행사비에서 충당키로 하고 결정통과

(6) 기공소 문제

모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
기사법 시행 세칙에 치과의사 지시감독 조항이 불투명하므로 관리치과의사를 두도록 개정안을 마련 보사부에 건의키로 하였음.
관계자 연석회의는 기공 문제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하였음.

(7) 치과월보 편집 기자 채용
7월 부터 월 2회 치과월보를 발간키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기자를 월 25,000원 범위의 급료를 지급키로 가결
공보특별회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키로 가결. 끝

총무이사 유 양 석
사무국장 김 준 권

협회지 편집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1974. 7. 10 (수) 오후 6시
2. 장 소 : 선도
3. 참 석 자 : 김용관, 윤중호, 조영필, 이덕일, 김영수, 이승루.
4. 위원장 인사 :
본 협회지가 월간으로 발간한지도 4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꾸준히 발간된것이 우선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번 총회에서 또는 회원 여러분의 여망인 개업의의 임상에 필요한 원고를 게재하여 명실공히 회원을 위한 협회지가 되어줄것을 바라고 있기에 오늘 모임을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저 하는 것이니 많은 협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 안
(1) 원저와는 게재할 수 있는 (즉 협회지 편집 인쇄 경비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지면을 18페지로 결정
(2) 종설, 씨리즈, 특집, 치과의사 실태등을 수록키로함.
(3) 투고 계획 책임 분담
김용관……보존학
조영필……구강외과, 치주과, 병리 기초
김영수……보철
윤중호……외국 문헌 소개
이덕일……개업의를 위한 투고

위 원 장 김 용 관
기록 사무국장 김 준 권

폐 업

張元仁	수 옥	종로구 종로 2가 56-8	
金奉燦	대 전	공주읍 반죽동	
鮮于聖鋼	광 천	공주군 유구면 유구리	
朴孝秀	서 울	서산군 해미면	
李學根	이	아산군 온양읍 91-11	
張讀正	장영정	종로구 종로 4가 28-1	
劉明學	유 한	도봉구 미아동 321-4	

開 業

성 명	치과의원명	소 재 지	전화번호
李炳基	현 대	전북 전주시 경원동 1가111	(2)3790
崔且興	제 일	전북 남원군 하정리 149-3	
趙重默	현 제	마포구 공덕동 236-5	(34)6733
李種一	수 경	중구 남대문로 5가 63-13	
崔致甲	경 휘	부산시 진구 당감동 246-92	
朴勝浩	수 옥	종로구 종로 2가 56-8	
孫 權	손	관악구 동작동 307	(69)2711 교 5684
李炳允	이병윤	중구 방산동 4-11	(25)9735
奏昌熙	진창희	중구 북창동 135-1	
朴英栢	영 생	서대문구 충정로 3가190-20	(75)7356
崔聖浩	최성호	성동구 신사동 78-2	
朴昶俊	박치과	성동구 황학동 317	(54)4237
李鍾義	신 림	관악구 신림 1동 73-1	
韓鍾喆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동 1의 45	(49)7722
金晶洙	일 광	서대문구 영천동 69-19	(75)0969
李昌榮	창 영	전북 전주시 전동 2가24-2	(2) 6046
姜正圭	강정규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352-7	
金鍾洛	김종락	부산시 동구 범일동 209-2	

移轉 開業

柳在熏	유치과	영등포구 화곡동 341-73	

사 망

金東佳	광 명	군산시 중앙로 1가 64	

免許있는
口腔衛生士 就業을
希望합니다.
連絡處 : 96—6 7 7 6